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76 발의연월일 : 2024. 9. 19.

발 의 자:이강일·천준호·이기헌

박범계 • 민병덕 • 이성윤

김우영·황명선·허 영

황운하 · 임미애 · 강득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직장과 가정 생활의 조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 치료 휴가 등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타 경조사에 따른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지 아니함.

이에 가족이 사망할 경우 근로자에게 상조 휴가를 주어 가정 생활의 중요한 부분인 조사(弔事)에 충당하도록 하고, 충분한 애도기간을통해 가족을 잃은 슬픔을 나누도록 하고자 함(안 제62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상조휴가) 사용자는 근로자의 부모 등이 사망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으로 상조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경우 상조휴가의 기간은 유급으로 하고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또는 제57조에 따른 보상 휴가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5일
- 2.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3일
- 3. 본인이나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3일
- 4.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 또는 자매의 사망: 3일

제110조제1호 중 "제64조제1항"을 "제62조의2, 제64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62조의2(상조휴가) 사용자는 근
	로자의 부모 등이 사망하는 경
	우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으로 상조휴가를 주
	어야 한다. 이 경우 상조휴가의
	기간은 유급으로 하고 제55조
	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또는 제57조에
	따른 보상 휴가의 기간에 포함
	<u>하지 아니한다.</u>
	1.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 또
	는 배우자의 사망: 5일
	2.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
	의 사망: 3일
	3. 본인이나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3일
	4.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 또
	<u>는 자매의 사망: 3일</u>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110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	1

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u>제64조제1항</u>,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자

	<u>제62조의</u>
<u>2, 제64조제1항</u>	
2. (현행과 같음)	